

1. 금융지원 확대 (제16조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「방위산업발전법」 개정(26.3.10.)으로,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를 단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,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

나. 개정 내용

- 모법 개정에 따라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 인용조문 변경, 금융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

※ 신·구조문대조표

개정 전	개정 후
제16조(자금융자 신청절차 등)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. <신 설>	제16조(금융지원 절차 등) ① -----제12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업체등 2.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위하여 연구개발, 생산시설 구축 또는 자체 투자 등을 추진하는 기업 3. 그 밖에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에 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

다. 입법효과 : 금융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업체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 도모